

한남대학교 - 효안과



업무협약서



한남대학교와 효안과는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진료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한남대학교와 효안과는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대상) 제후를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남대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및 학생들로 하며, 추가 진료대상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편의제공) 한남대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및 학생들의 수술비는 협약서에 별첨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술비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

제4조(상호협력) 한남대학교와 효안과는 원활한 협조체계 운영을 위해 회의 주관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편의제공 내용 위반 시 협약을 해지한다.

제5조(유효기간)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1년마다 협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준용)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04일



총 장
이 광 섭

이 광 섭



원 장
이 효

이 효